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59
----------	-----

2025. 3. 21.(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영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7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및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현행 휴양림 지역상품권페이백 사업의 환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사용 용어를 개정 및 추가 정의함.(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 시·도민”
-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규정(안 제12조 및 별표2)
- 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기준을 조정함(안 제21조)
 - 지역상품권페이백사업 축소 : (현행) 50% → (조정) 30%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부자(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지역사회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기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이해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에 체결한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서(2024.10.14.)」으로,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충청도민에서 충청권 4개(충북·충남·대전·세종) 시·도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상품권페이백 비율 조정(50% → 30%)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필요 조치로써, 충청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장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예 산 액	101,750천원	81,400천원	△20,350천원
숙 박 료	48천원	48천원	4인실 기준
환 급 륜	50%	30%	△20%
환 급 액	24천원	15천원	△9천원
수 혜 자	4,240명	5,427명	28%↑ (1,187명) 공공숙박시설(81개소) 최근3년 이용 증가율 고려
결 과	2024년 대비 예산 20,350천원 감액 되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수혜자는 1,187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며, 환급률 축소(30%)에도 연중 예산범위에 따라 적정히 추진 가능함.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 예고(' 25. 3. 6.~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구성 및 표현이 명확하며,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도 적절하게 유지됨.
-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의2)에서 성별 및 연령별 분석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익명 검사 지원(안 제5조제1항제5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부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협력 강화 차원의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는 타당한 조치임.
- 지역상품권페이백 비율 조정의 경우 예산운영 측면 등에 있어 필요

하나, 향후 이용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정히 충족하기 위해시계열적 조사와 충청도 관광 활성화에 관한 변화 추이를 계속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상품권 페이백 비율 조정은 집행부와 담당부서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 관리하여 적정성 유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859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9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및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현행 휴양림 지역상품권페이백 사업의 환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사용 용어를 개정 및 추가 정의함.(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 시·도민”

나.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규정(안 제12조 및 별표2)

다. 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기준을 조정함(안 제21조)

- 지역상품권 페이백사업 축소 : (현행) 50% → (조정) 30%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9.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기부자를 말한다.

20. “충청권 시·도민”이란 도민과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7. 충청권 시·도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제21조 본문 중 “50%”를 “30%”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

<u><신 설></u>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1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 권 환급) 도지사는 주중에 숙박 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제금액의 <u>50%</u>를 지 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관광 사업의 활 성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환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u>부를 약정한 기부자를 말한 다.</u> 20. <u>“충청권 시·도민”이란 도민과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 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u>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u>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u> 7. <u>충청권 시·도민이 자연휴양 림을 이용하는 경우</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 권 환급) ----- ----- ----- <u>30%</u> ----- ----- . ----- ----- ----- ----- -.
--	--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 집, 복합휴양관, 무궁화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 수 기 주 중 에 한 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외 등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임산부	요금의 5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요금의 20% 할인		
	충청권 시·도민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요금의 50% 할인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기부자 예우)

-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가보훈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충청북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
를 확대하고,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현행 휴양림페이백 사업의
지역상품권 환급비율을 조정(50%→30%)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써,
- 조례 개정시 예상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